

제2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김화영 의원 발의】



2021. 4. 19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335호로 2021년 4월 8일 김화영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포상대상의 제외사항을 추가 신설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대상의 제외사항 추가 신설(안 제2조제2항)

- 신문, 방송,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·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
-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

나.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」 , 「물환경보전법」 , 「화학물질관리법」 , 「토양환경보전법」 ,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.

다. 입법예고(2021. 4. 8. ~ 4. 12.) 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○ 본 건은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환경오염행위 신고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포상대상의 제외 사항을 추가 신설하고자 제출된 개정 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2조제2항에 신문, 방송,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·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과 법원에 재판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대상에서 제외토록 추가 신설하였고
- 그 밖에 「물환경보전법」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음.

○ 환경오염행위 신고 제도는 주민의 제보를 통해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「물환경보전법」 등 환경 관련 법령의

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구청장이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음. 다만, 합리적인 제도 운영과 신고의 오·남용 방지를 위해 정당하지 않은 신고 등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. 따라서 언론매체 등을 통해 기 보도된 사건·사고,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 등 공개된 환경오염사항을 신고한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내용이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하게 규정되었음.

# 참 고 자 료

## 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~ 7. (생략)
8. “환경법위반행위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  - 가.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
  - 나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. 다만, 시멘트·석탄·토사(土砂)·사료·곡물 및 고철의 분체(粉體) 상태 물질을 운송한 경우는 제외한다.
  - 다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

**제3조(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)** ①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
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
③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「물환경보전법」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자로서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1. 농업, 축산업, 임업 또는 원예업에 이용되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해당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
2. 바다, 하천, 호소(湖沼) 또는 지하수를 별표 1에서 정하는 규모 및 기준 이상으로 오염시킨 자

3. 어패류를 별표 2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집단폐사(集團斃死)에 이르게 한 자

**제4조(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)** ① 환경보호지역에서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형(刑)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.

② 환경보호지역에서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15조제1항제2호(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「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제1항제3호, 「자연공원법」 제23조제1항제3호(공원구역 중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경우만 해당한다), 「습지보전법」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「수도법」 제7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토지를 300제곱미터 이상 형질변경한 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
③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거나 제2항의 죄를 범하여 환경보호지역을 그 설정 또는 지정의 목적을 상실하게 할 정도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
**제5조(과실범)** ①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③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**제6조(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)** 매매를 목적으로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7조,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9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같은 법 각 해당 조에서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(價額)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(併科)한다.

**제7조(폐기물 불법처리의 가중처벌)**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「폐기물관리법」 제63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

의 징역과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.

**제8조(누범의 가중)**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또는 제7조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지 3년 내에 제3조제1항, 제4조제3항 또는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이 경우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.

**제9조(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등)**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명령(철거명령은 제외한다)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판을 제거·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